

공감형 AI 여성공학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공감형 AI 여성공학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이하 공감형AI 교육연구팀)의 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행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근거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예산 집행기준 등을 상위의 규정으로 하고 사업팀 운영의 세부 지침을 만든다.

제 3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사업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전체 참여교수로 이루어지며 사업팀 내규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5조 참여대학원생

가. 참여대학원생은 공감형AI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입학한 지 4학기가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② 입학한 지 8학기가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③ 입학한 지 12학기가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나.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 공감형AI 교육연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라. 참여대학원생 졸업 요건

① 석사과정 이수 요건

- 학위논문 심사일 이후 1개월 이내 SCIE 저널 또는 BK21 CS 우수국제학술대회에 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증빙: 투고관련 레터 등).
- “해외인턴프로그램” 또는 “해외인턴프로그램II” 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과정 중 공통교과목인 “공감형인공지능세미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요건

- 학위논문 심사일 이전까지 JCR 30% 이내 SCIE 저널 또는 BK21 CS 우수국제학술대회에 저자로서 1편 이상 / JCR 50% 이내 2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승인 레터를 포함하여 IT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요건 연구업적 평가기준에 따른 9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해외인턴프로그램” 또는 “해외인턴프로그램II” 과정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과정 중 공통교과목인 “공감형인공지능세미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6조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가.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 공감형AI 사업팀에서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나. 지원대학원생에게는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①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 이상 지급 가능)
- ②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6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60만원 이상 지급 가능)
- ③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3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30만원 이상 지급 가능)

다.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 장학금 신청을 하고, [표1]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 7조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포상금)를 지급할 수 있다.

- ① 지출은 국고-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교비대응-연구활동비(연구인센티브) 항목에서 지출한다.
- ② 참여 기여도에 따라 학기 말(8월, 2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평가, 추천하여 지급한다.
 - 평가 기준은 [표1]에 기재된 평가 기준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학기 말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이 외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센티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회의록 작성 필수)

제 8조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가.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팀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사업팀의 재편성의 근거로 삼는다.

나.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다.

- ① 평가는 상기 (가) 항목(목적)에 근거하여 사업팀 운영에 필요 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공감형AI 교육연구팀 개시 첫해의 평가는 1년간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제2차년도 말의 평가는 최근 2년간, 제3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다.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 기준은 [표2]에 기재된 평가 기준으로 한다.

라.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사업팀 참여교수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사업팀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마.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 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①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 ②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 ③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바. 참여교수의 선발 및 변경 등의 사항은 세칙에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표 1] 업적 평가 기준

순서			세부사항		실적 기간
1	석사	석사 1학기	학부 성적을 5점 만점으로 환산 (전 학기 평량 평균 및 백분율을 기준)		학부성적 전체성적
		석사 2~4학기	직전학기 성적을 5점 만점으로 환산		직전학기
	박사	수료생은 박사과정 전체 성적			
2	논문실적 (최대 60점)	1) SCIE	JCR 랭킹 5%이내	한 편당 30점	직전학기
			JCR 랭킹 10%이내	한 편당 20점	
			JCR 랭킹 30%이내	한 편당 15점	
			JCR 랭킹 50%이내	한 편당 10점	
			JCR 랭킹 50% 외	한 편당 6점	
		2) SCOPUS 논문 (article DOI 발급 논문인정)	한 편당 4점	직전학기	
3) 국내 논문 (등재지만 인정), 기타 국제논문 (DOI 발급된 논문인정)	한 편당 3점	직전학기			
3	특허 (최대 40점)	국 외	출원	한 건당 3점	직전학기
			등록	한 건당 15점	
		국 내	출원	한 건당 1점	직전학기
			등록	한 건당 4점	
4	학술발표 (최대 30점)	국 외	BK21 CS 우수국제학술대회	Top-tier: 20점 2-nd tier: 10점	직전학기
			기타	2점	
			국 내	1점	
		수상실적 (최대 15점)	한 건당 최대 5점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2-1	논문 및 학술발표 반영비율	주저자: 국제 2/(n+1)*100%+10%, 국내 2/(n+1)*100% 공동저자: 1/(n+1) * 100% (n, 전체 기여자 수)			
3-1	특허 반영비율	1/n * 100% (n, 전체 기여자 수)			
150점 만점					

제 9조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가. 본 규정은 4단계 BK21사업 공감형AI 사업팀에 소속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연도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 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팀 참여도 실적을 평가한다.
- ② 성과급 평가항목 및 배점은 [표2]에 따른다.
- ③ 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참여 교수에게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순 위	1	2	3	4	5 이하
비율 범위	50% 이내	40% 이내	30% 이내	20% 이내	0

[표2]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4단계	실적 기간
참여교수 실적 (50점)	[표1]에 기재된 평가기준 중 1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합	50점으로 환산 평가기간
참여대학원생 실적 (50점)	지도 학생들의 [표1]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른 총점의 합	50점으로 환산 평가기간
산학 협력 실적 (20점)	기술이전 실적(8점)	0-20점 부여 평가기간
	사업화 실적(8점)	
	창업 실적(4점)	
BK참여 점수 (30점)	연구팀 운영 및 보고서 작성 기여도에 따라 점수 부여	0-35점 부여 평가기간
총점	150점	

- * 평가 기간은 매년 12개월(3월 1일 ~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 * 각 평가 항목 별 실적이 최고점수 기준 초과 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로 반영함.
- * 단 1인 당 지급액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제 10조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가. 본 규정은 공감형AI 사업팀이 신진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자격

- ① 사업팀은 계약교수와 박사후연구원(Post-doc)을 채용, 지원하며 대학과 학과의 임용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 ② 박사후연구원의 채용기준은 최근 2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SCIE급 JCR 랭킹 20% 이내 논문실적이 1편 이상, 이를 포함한 전체 SCIE 논문 편수가 3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단, MDPI, Frontier, Hindawi 저널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SCIE급 JCR 랭킹 30% 이내 논문실적(MDPI, Frontier, Hindawi 저널 제외) 또는 BK21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이 1편 이상 게재(발표)실적이 충족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논문실적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라. (계약 기간)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사업팀의 신진연구인력은 대학원 강의 및 지도 대신에 4단계 BK21사업 공감형AI 사업팀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 자문과 조연을 수행한다.

제 11조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업단전담직원 활용 지침

가. 본 규정은 공감형AI 사업팀의 산학협력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다. 산학협력전담직원이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와 관련된 산업체를 발굴하여, 협동과정에 소속된 참여 학생들의 취업연계·현장실습·산학공동과제, 참여교수의 연구수행 지원 등 산학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임용절차

-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업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위촉 추천한다.
 1. 사업팀장 추천서
 2. 산학협력전담직원 활용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이력서

마.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사업기간 동안 연장 가능)

바.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사업팀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다'항에 정의한 사업팀 내의 산학협력업무에 전념한다. 단,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사. 산학협력전담직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정보기술사업팀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아. 해촉

-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제6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사업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팀장은 총장에게 해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 12조 국제화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해외공동연구기관 파견

가. (국제화경비 지원비)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대학원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단기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15일 이내의 국제학술대회)

- 경비 집행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구두발표 총 논문이 20건 이상
 -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시 경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 1순위: BK21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
 - 2순위: IEEE/ACM 국제학술대회 논문
 - 3순위: 그 외 기타 국제학술대회 논문
- 10일 이내의 국제화경비 지원은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1인 당 최대 300만원/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미주, 유럽의 경우 1인당 최대 400만원/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경우, 1인당 최대 350만원/회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미주, 유럽의 경우 1인당 최대 450만원/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 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단, 참여교수는 지도교수 자격으로 단기연수에만 지원이 가능).
-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 a. 여비지급신청서 1부
 - b.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1부
 - c.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팸플릿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 d. 항공권 INVOICE 1부
 - e. 학회 Accept Letter 1부
 - f.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1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a. 국제학술회의 참가 출장보고서 1부.
 - b. 항공권 보당패스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 c.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 stamp 확인 및 신분확인 되는 면 각 1page) 1부.
 - d. 학회 프로그램 책자, 본인 논문 게재 부분 및 관련 사진 1부.

e.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6.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국외여비 규정에 따른다.

② 중기해외연수(15일 초과 1개월 이내)(해외인턴십프로그램/II)

- 대학원생이 해외 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 사업단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참여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사업팀장이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대학여비 기준)이며 15일 이상의 경우 1인당 최대 350만원/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미주, 유럽의 경우 1인당 최대 450만원/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중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초과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대상자는 학회 참가 전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 후 Boarding pass, 여권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및 수행 후 아래의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제협력프로그램 또는 해외인턴십프로그램/II 결과보고서(지정 양식)
 - . 연구 발표회 및 인턴십 경험 공유회 참석

③ 장기해외연수(30일 초과 2개월 이내)(해외인턴십프로그램/II)

- 대학원생이 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다. 사업단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참여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사업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 기준), 체재비(대학여비 기준)이며 1인당 최대 500만원/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 30일을 초과하는 해외 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해외 인턴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프로그램/II 지원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Boarding pass, 여권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및 수행 후 아래의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제협력프로그램 또는 해외인턴십프로그램/II 결과보고서(지정 양식)
 - . 연구 발표회 및 인턴십 경험 공유회 참석

④ 해외석학초청

- 당해 연도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팀에 신청하고 사업팀장은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초청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해외석학(정교수급)을 초빙하며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학생을 집중지도 하거나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숙박비, 자문료, 회의비이며,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 지급기준은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 자체 운영규정(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 13조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가. 국내여비

- ① 과제참여교수 및 연구보조원의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 본 대학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1. 국내 학회 참석 시 출장 시작 일주일 전에 신청한다.
 - 2. 여비는 출장 명령 후에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3. 학회 참가비에 숙박비, 식사비 등의 체재비 포함 시,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여비를 지급한다.
 - 4. 출장 완료 후 7일 이내에 교통비 지급 관련 영수증(승차권, 보딩패스, 하이패스 영수증 등), 학회 참석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5.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국내여비 규정에 따른다.

나. 학술활동 지원비

- ① 국내 학술활동 사업내용과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게재료 : 4단계 BK21사업에서 지원받았음을 명시한다(사사표시 필수).
 - 2.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연회비 성격의 참가비는 지급 불가하다.
 - 3. 전문가 초청 자문료,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단(팀) 소속학과 구성 원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 * 지급기준은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른다.
 - 4.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등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다. 회의 및 행사 개최비(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① 회의 및 행사 개최비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팀 개최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으로 집행 가능하다. 단,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 구비하여야 한다.
 - 2.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 집행 시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한다.
 - 3. 식대와 관련한 회의비는 회의 당 1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초안 작성: 2024년 3월 1일